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제출자 : 정선희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 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4조)
 -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 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
 -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독서환경의 조성 및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독서관련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각종 사업추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독서의 달 운영, 표창 수여, 관계기관협력,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분석한 ‘2013년 독서실태 및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1.96권으로, 지난 2008년 보다 7.52권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에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시민의 독서량이 전국 평균(9.2권)보다 근소하게 많지만, ‘도서관 천국’인 서울에서 책 읽는 시민이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독서관련 행사의 개최,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정선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97 |
|----------|-----|

발의년월일 : 2014년 4월 일

발 의 자 : 정선희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4조)
 -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 국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
-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교육지원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